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7

발의연월일: 2024. 6. 27.

발 의 자:전재수・이기헌・허 영

신영대 · 김정호 · 민홍철

김태선 · 복기왕 · 위성곤

이학영ㆍ허성무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 추어, 유류오염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관할과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 청사건의 관할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32 조제2항 및 제3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022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를 "해사전문법원에 전속한다"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방법원"을 "해사전문법원"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따라 해사전문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날 해사전문법원이 아닌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	제12조(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		
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	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		
의 관할)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의 관할)		
대한 소송은 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			
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해사전문법원에 전속한다.		
제32조(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	제32조(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		
청) ① (생 략)	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책임	②		
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이			
하 "책임제한사건"이라 한다)의			
관할은 그 유조선 유류오염손			
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u>지</u>	<u>ন্টা</u>		
<u>방법원</u> 에 전속한다.	<u>사전문법원</u>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책임제한사건의 이송) 법	<u><삭 제></u>		
원은 뚜렷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책			
임제한사건을 다른 관할 법원			
이나 제한채권자의 보통재판적			
이 있는 곳의 법원 또는 같은			

사고로 생긴 유조선 유류오염 손해에 관한 책임제한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